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11월 26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2일, 고영찬 의원  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  
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  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문제가 상당함에 따라 종이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구청장, 공공기관의 장, 구민의 책무(안 제3조)
-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(안 제4조 및 제5조)
- 공공기관 협조 및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- 교육 및 홍보,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제정 이유

○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됨.

#### 2) 주요 내용

가)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종이사용 줄이기의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: 금천구청, 구의회, 산하기관, 공단, 출자출연기관

나)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구청장, 공공기관의 장, 구민의 책무(안 제3조)

-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위해 금천구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책무를 명시함

다)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실태조사(안 제4조 및 제5조)

라) 공공기관 협조 및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(안 제6조 및 제7조)

마) 교육 및 홍보,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
#### 3) 검토 의견

○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종이 사용을 줄이는 사회적 실천 운동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.

○ 종이없는 회의 활성화, 생활 속 종이낭비 줄이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천구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종이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명확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